옥천군 공고 제2019-52호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정비함

○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옥천군 군세 감면사항으로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감면기한 3년간 연장 : 기존 2018.12.31. → 변경 2021.12.31.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조문정비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 율 100분의 50으로 개정
- 제1호 및 제2호 삭제

4. 의견제출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의견제출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중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 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 ---------- ---------- ---------- ---------- ---------- - 2021년 12월 31일---------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 ---------- ----------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 ---------- ---------- ---------- ----------

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 2021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2021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

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한 감면) ---------- ------- 2021년 12월 31일---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2021년 12월 31일----------.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 --- 별지 제1호서식---------- ----------. ----------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